
정당사무실무

202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제1장 정당제도 개요	1
1. 정당의 정의	1
2. 정당의 구성	1
3. 정당의 성립	1
4. 정당의 소멸	3
제2장 창당준비위원회	5
1. 개 요	5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5
3.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20
제3장 정당의 등록	22
1. 개 요	22
2. 중앙당 등록	22
3. 시·도당 등록	39
제4장 정당의 합당	54
1. 개 요	54
2. 신설합당	54
3. 흡수합당	62

제5장 정당의 소멸	67
1. 개 요	67
2. 등록취소	67
3. 자진해산	71
4. 등록말소	73
제6장 입당 및 탈당	75
1. 입 당	75
2. 탈 당	80
제7장 정당의 정기보고	85
1. 정당의 정기보고	85
2.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	86
제8장 인영확인 및 과태료	104
1. 정당의 인영확인신청	104
2. 과 태 료	104
부록 1. 정당에 관한 신청·신고 등의 사무처리 일람표	107
부록 2. 규칙 별지서식 및 참고서식 차례	109

제 1 장 정당제도 개요

1. 정당의 정의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합니다(법 제2조).

2. 정당의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합니다.

3. 정당의 성립

가. 성립요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정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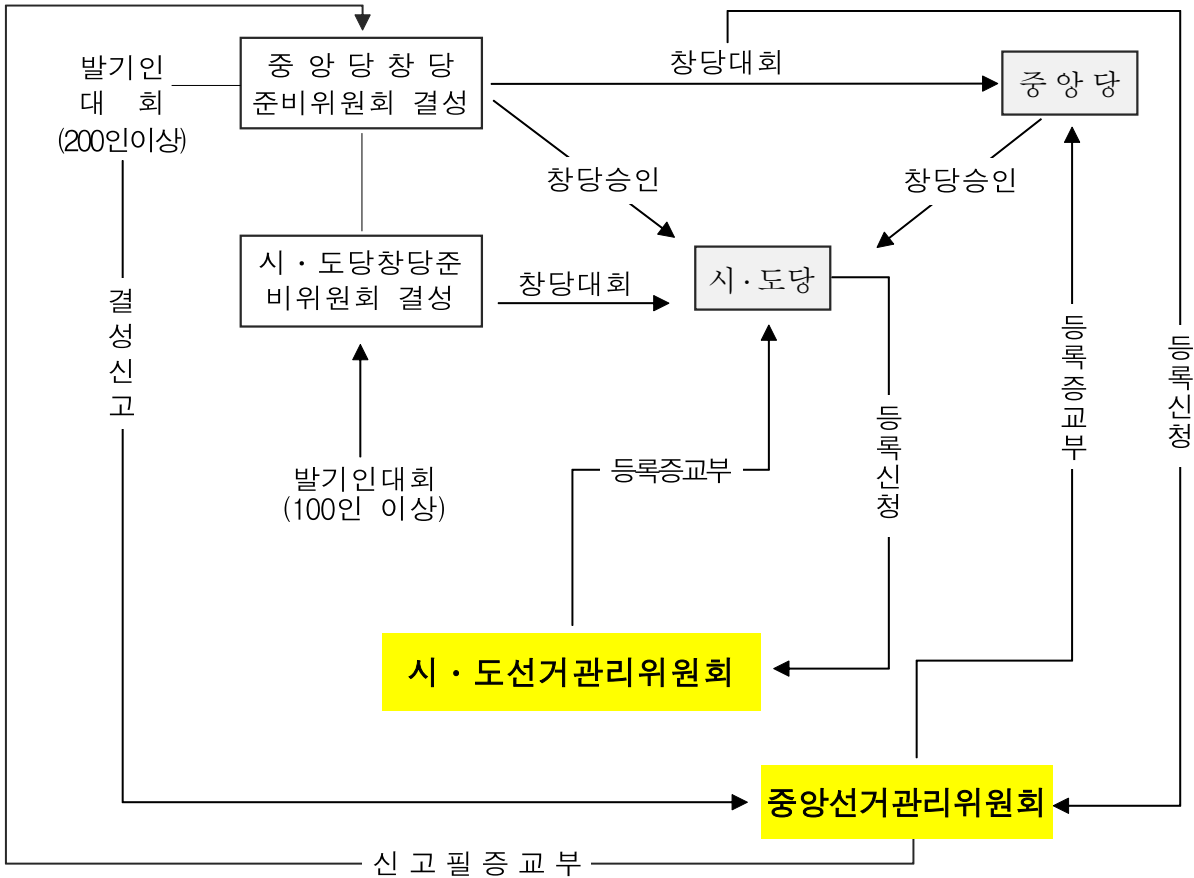
2)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8조).

나. 정당의 창당절차

1) 창당절차의 흐름도

정당의 창당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창당절차

가) 제1단계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활동

-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를 채택하고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한 후 중앙당창당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는 1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를 채택하고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시·도당창당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제2단계 : 시·도당창당 및 등록신청

- (1) 시·도당을 창당할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간부 등을 선임하고 창당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그 대표자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3단계 :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

-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법정시·도당수 및 법정당원수 확보 등 창당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간부 등을 선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2) 창당집회는 그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를 하여야 하고 집회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정당의 소멸

가. 등록취소

정당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법 제44조).

- 1) 정당의 시·도당수가 5개에 미달된 때(법 제17조)
- 2) 시·도당이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을 1천인 이상 확보하지 못한 때(법 제18조)

※ 1), 2)의 경우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합니다.

- 3)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4) 정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 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기로 한 다음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여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법 제20조)
- 가) 시·도당의 명칭과 소재지
 - 나) 시·도당 대표자의 성명·주소

나. 자진해산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다. 기타 소멸사유

1) 소멸사유

- 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해산 결정(헌법 제8조제4항)
- 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법 제46조)
- 다) 신설합당의 경우 그 소속 시·도당이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19조제4항)
- 라)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에 따른 시·도당 소멸 등

2) 등록말소

정당이 소멸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법 제47조).

제 2 장 창당준비위원회

1. 개 요

- 가.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당창당을 위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시·도당창당을 위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 나.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당의 목적범위라 함은 창당을 위한 조직활동을 말합니다(법 제8조제1항).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그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내지 제8조).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22조)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벌칙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가. 결성신고

- 1) 결성신고자 :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 2) 결성신고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
- 3) 결성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결성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 결성신고사항

- 발기의 취지
- 정당의 명칭(가칭)
-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사무소의 소재지
-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발기취지문
- 발기인의 명단(별지 제1호)
- 인영서(별지 제2호)
-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대표자의 이력서


4)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발기의 취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취지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법 제40조)

나) 정당의 명칭(가칭)

-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법 제41조제2항).
- (2)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법 제41조제3항).
- (3)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41조제4항).

 **벌칙**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항)

다) 사무소의 소재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소재지에 관하여 명문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법 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경우에 준하여 수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당창당발기인대회는 지방에서 개최하여도 무방합니다.

라)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인장의 크기는 제한이 없으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 [(예: ○○○(가칭)창당준비위원회인)]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마)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개최일시·장소와 성원 및 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원본대조필 확인과 회의록 말미에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면사이 간인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 발기인동의서

원본 제출

나. 변경신고

- 1) 변경신고자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 2) 신고시기 :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 3) 변경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변경신고사항	구 비 서 류	비 고
발기의 취지	회의록 사본, 발기취지문	
명칭	회의록 사본	
대표자	회의록 사본, 취임동의서 대표자의 이력서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회인 또는 대표자직인	인영서	

☞ 벌칙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
100만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발기취지문 서식예시】

○○○(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년 월 일

○○○(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

인 영 서	
명 칭	
<input type="checkbox"/> 회 인 <input type="checkbox"/> 당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비 고	

- 주 1. 정당(중앙당, 시·도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당인(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란에는 창당준비위원회명 또는 정당(중앙당, 시·도당)명을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합니다.
4. “회인”과 “당인”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5. “비고”란은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다.

【대표자 취임동의서 서식예시】

대 표 자 취 임 동 의 서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귀중</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당, 시·도당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2.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대회 회의록 서식예시】

○○○(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창당발기인대회 회의록

○ 일 시 : 20 년 월 일

○ 장 소 :

○ 참석자 :

○○○(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1. 개 회(성원보고 포함)
2. 국민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발기취지문 채택
6. 창준위 규약(명칭 포함) 채택
7. 대표자 등 임원 선출
8. 기 타
9. 폐 회

기록자 직책:	성명: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사무소 소재지 약도 서식예시】

사무소 소재지 약도	
명 칭	○○○(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 주소	
전화 번호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중양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발 기 의 취 지					
인 영	회 인				
	대표자 직 인				
<p>중양당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7조 제3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중양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p>					
<p>중양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기취지문 1부. 2. 인영서 1부. 3. 대표자 취임동의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6. 대표자 이력서 1부. 					
<p>주 1. 변경신고는 신고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결위·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p> <p>2.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p> <p>3.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다. 소 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활동기간 만료, 자진해산신고 또는 중앙당등록에 의하여 소멸되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동시에 소멸됩니다(법 제8조제3항).

1) 창당활동기간 만료

- 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중앙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제2항, 제3항).
-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 계산은 결성신고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소멸일자는 창당활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 자진해산신고

- 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전체회의나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을 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45조 준용).
-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자진해산시 첨부하는 자진해산결의 회의록 사본에는 개최일시, 장소, 성원 및 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회의록 말미에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면사이 간인 포함)과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 가. 시·도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10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6조).
- 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진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칭 (가칭)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p>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위와 같이 자진해산하였기에 「정당사무관리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구비서류: 자진해산결의 회의록 사본 1부.	
주 :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 3 장 정당의 등록

1. 개 요

- 가.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 나. 정당의 등록에는 창당으로 인한 신규등록, 기등록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과 기존정당들이 합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신설하는 신설합당등록이 있으며(법 제19조, 제20조), 정당은 중앙당이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4조제1항).

2. 중앙당 등록

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정당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법정시·도당수 확보

중앙당을 등록하려면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4조제2항, 제17조).

2) 창당집회의 개최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창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창당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의 창당대회는 공개하여야 하며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3) 강령 및 당헌 등의 제정

정당은 그 강령(기본정책)과 당헌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4) 당헌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당헌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 제46조, 제48조제1항)

당헌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 ◆ 정당의 명칭
- ◆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 ◆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 ◆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 ◆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인계업무
- ◆ 대의기관·집행기관·의원총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
- ◆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제명 등 필요한 사항
- ◆ 대의기관 결의 시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는 방법
- ◆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에 관한 사항
- ◆ 시·도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5) 내부기구의 설치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합니다(법 제29조).

정당의 조직·기구

◆ 대의기관

정당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당원총회, 대의원대회 등이 있음. 원칙적으로 정당의 의사는 당원의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당헌에 따라 다른 대의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집행기관

대의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정당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둘 수 있음.

◆ 의원총회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로서 원내활동과 소속의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의의가 있으며, 또한 현재 각 정당의 내부조직에 따라 원내총무, 의원단대표, 원내대표 등의 명칭을 사용함.

◆ 정책연구소

정책정당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예산결산위원회

정당의 회계처리의 투명화와 건전성을 위하여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함.

나. 등록신청

1) 등록신청자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법 제11조)

2) 등록신청기간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법 제11조), 단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중앙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제3항).

3)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2조)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 포함)
- 사무소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원의 수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구비서류

- | | |
|-----------------------|---------------|
|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 간부의 명단 |
| ● 인영서 | ● 시·도당의 일람표 |
|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 ●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 ● 대표자의 이력서 | |

4) 중앙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등록신청자의 명의

신청자의 명의를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의 명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명의로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정당의 명칭

(1)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현재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 제41조제2항, 제3항).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41조제4항).

☞ 벌칙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항)

다) 강령(기본정책)과 당헌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습니다(법 제 40조).

라) 당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당의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마)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목적·일시·장소·공고일자 등 그 명료성에 흠결이 있는 창당집회공고는 창당집회 개최공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은 공고문이 게재된 전면을 첨부하여 공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 인영서, 대표자 취임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서식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의 구비서류를 활용합니다.

☞ 벌칙 허위로 정당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제1항)

5) 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중앙당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 칭 (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간부의 성명·주소				
강령(또는기본정책)과 당헌				
당인 및 대표자직인의인영				
시·도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주소				
당원의 수	합 계		관할 시·도 안에 주소를 둔 당원	관할 시·도 밖에 주소를 둔 당원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당을 위와 같이 창당하였기에 「정당법」 제11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1부. 2. 간부의 명단 1부. 3. 인영서 1부. 4. 시·도당의 일람표(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1부. 5.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6.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1부. 7.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1부. 8.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9.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을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을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2.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별지 제2호>

인 영 서	
명 칭	
<input type="checkbox"/> 회 인 <input type="checkbox"/> 당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비 고	

- 주 1. 정당(중앙당, 시·도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당인(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란에는 창당준비위원회명 또는 정당(중앙당, 시·도당)명을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합니다.
4. “회인”과 “당인”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5. “비고”란은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다.

【대표자 취임동의서 서식예시】

대 표 자 취 임 동 의 서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당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 당 귀중</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당, 시·도당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2.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부 취임동의서 서식예시】

간 부 취 임 동 의 서		
직 책 명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에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 당 귀중</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중앙당, 시·도당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2.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 약도 서식예시】

사무소 소재지 약도	
명 칭	○○○당
사무소 주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이력서 서식예시】

사 진 (반명함판)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성별)	
전 화 번 호				
주 소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 고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중앙당, 시·도당의 대표자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탈모)이어야 합니다.

다. 변경등록신청

- 1) 변경등록신청자 : 중앙당대표자
- 2) 변경등록신청기간 :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
- 3) 변경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4조)

변경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간부의 명단
- 인영서
- 회의록 사본
- 대표자의 이력서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4)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등록신청자의 명의

이미 등록된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되, 대표자가 탈당한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은 새로이 선임된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합니다.

나) 대표자직인이 변경될 경우라도 신청서에는 변경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그 외의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은 제3장 2. 나. 4) 중앙당등록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 벌칙

-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제1항)
-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5) 변경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변경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중앙당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중앙당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서					
문 서 번 호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사무소의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간부성명·주소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인 영	당 인				
	대표자직인				
<p>중앙당의 등록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14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당 대표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1부. 2.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3. 간부의 명단 1부. 4. 인영서 1부. 5. 회의록 사본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7.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탈당·사망·결위·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p> <p>2.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p> <p>3.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을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을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4.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3. 시·도당 등록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개적인 창당집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한 후, 그 대표자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가.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시·도당창당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정당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확보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8조).

※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창당집회 개최

시·도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하며 그 집회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3) 내부기구의 설치

시·도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충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29조제1항).

4)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3조제2항).

나. 등록신청

1) 등록신청자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2) 등록신청시기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법 제11조)

3)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3조)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원의 수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간부의 명단
-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인영서
- 창당승인서
- 대표자의 이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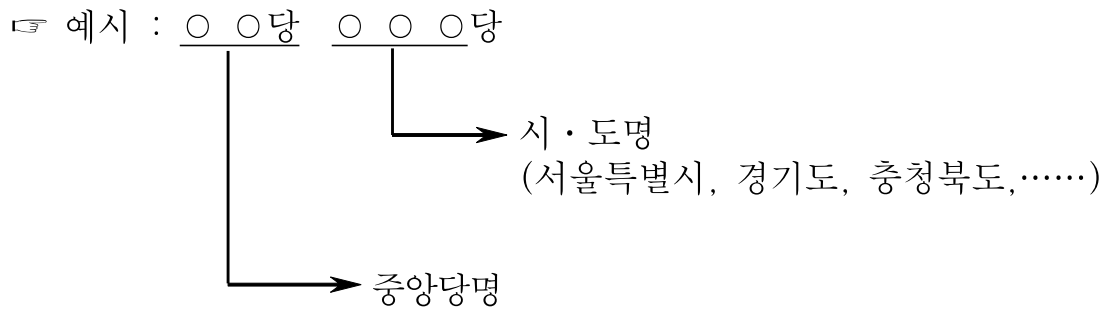
4) 시·도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등록신청자의 명의

등록신청자의 명의를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의 명의이어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 시·도당의 명칭

시·도당의 명칭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생략됨이 없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사무소소재지

시·도당사무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및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입당원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그 외의 등록신청서의 작성은 제3장 2. 나. 4)의 중앙당등록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 벌칙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1항)

5) 등록수리 및 처리절차

등록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시·도당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간부의 성명·주소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당원의 수	합계		관할 시·도 안에 주소를 둔 당원	관할 시·도 밖에 주소를 둔 당원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당을 위와 같이 창당하였기에 「정당법」 제11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부의 명단 1부. 2. 인영서 1부. 3.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4. 창당승인서 1부. 5.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1부. 6.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부. 7.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8.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은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은 “직책”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2.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별지 제2호>

인 영 서	
명 칭	
<input type="checkbox"/> 회 인 <input type="checkbox"/> 당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비 고	

- 주 1. 정당(중앙당, 시·도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당인(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란에는 창당준비위원회명 또는 정당(중앙당, 시·도당)명을 기재합니다.
3.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합니다.
4. “회인”과 “당인”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5. “비고”란은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의 사유와 일자 등을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다.

【대표자 취임동의서 서식예시】

대표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당○○시·도당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 · 도 당 귀중</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당, 시·도당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2.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부 취임동의서 서식예시】

<h2 style="margin: 0;">간 부 취 임 동 의 서</h2>		
직 책 명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본인은 ○○당○○시·도당 ()에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 시 · 도 당 귀중</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중앙당, 시·도당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2.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도당 창당승인서 서식예시】

창 당 승 인 서		
명 칭		
사무소의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주 소	
승인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당 ○○시(도)당의 창당을 승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가칭)창당준비위원회 (○ ○ 당)</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회인 (당인)</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직인</div> </div>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성명과 직인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중앙당대표자의 성명과 직인을 말합니다.

【입당원서 서식예시】

입 당 원 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원자격 제한 여부 주1)	
주 소			
<p>본인은 ○○당 ○○시·도당에 입당하고자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주1)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조)</p> <p>주2)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정당법」 제42조)</p> <p style="text-align: center;">○○당 ○○시·도당 귀중</p>			
<p>법정대리인 동의서</p> <p>상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 정당의 입당신청(「정당법」 제23조제1항)에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p>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p><유의사항></p> <p>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정당법」 제42조는 <u>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u> 있으며 동법 제54조에서 <u>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u>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주」 주민등록번호는 당헌·당규에 따라 생년월일, 나이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소재지 약도 서식예시】

사무소 소재지 약도	
명 칭	○○○(가칭)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 주소	
전 화 번 호	

다. 변경등록신청

- 1) 변경등록신청자 : 시·도당대표자
- 2) 변경등록신청기간 :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로부터 14일 이내
- 3) 변경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간부의 명단
- 인영서
- 회의록 사본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대표자 또는 간부의 이력서

4)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대표자 등의 유임 시 변경등록

당해 정당의 당헌상 선출 또는 임기직의 대표자·간부 등이 임기만료 등으로 재선임(유임)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신청자의 명의

이미 등록된 대표자의 명의이어야 하되, 대표자가 탈당한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은 새로이 선임된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변경등록신청서에 날인된 대표자직인의 인영 이미 신고된 인영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의 변경등록신청서의 작성은 제3장 3. 나. 4)의 시·도당등록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5) 변경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변경등록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 ◆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 수로 제한됩니다(법 제30조제1항).
- ◆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합니다(법 제30조제2항).

☞ 벌칙

-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제1항)
-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당 변경등록 신청서			
문서번호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명	칭		
사무소의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간부성명·주소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인영	인		
	대표자직인		
<p>시·도당의 등록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14조 및 「정당 사무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시·도당 대표자 직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2. 간부의 명단 1부. 3. 인영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중앙당 승인서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7. 대표자의 이력서 각 1부. 			
<p>주 1. 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탈당·사망·궐위·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p> <p>2.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p> <p>3.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을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을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4. 당헌·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개편에 중앙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제 4 장 정당의 합당

1. 개 요

- 가. 정당은 그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정당의 합당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하는 신설합당과 하나의 정당이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흡수합당의 2가지가 있습니다 (법 제19조).
- 나.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법 제19조제5항),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됩니다(법 제21조).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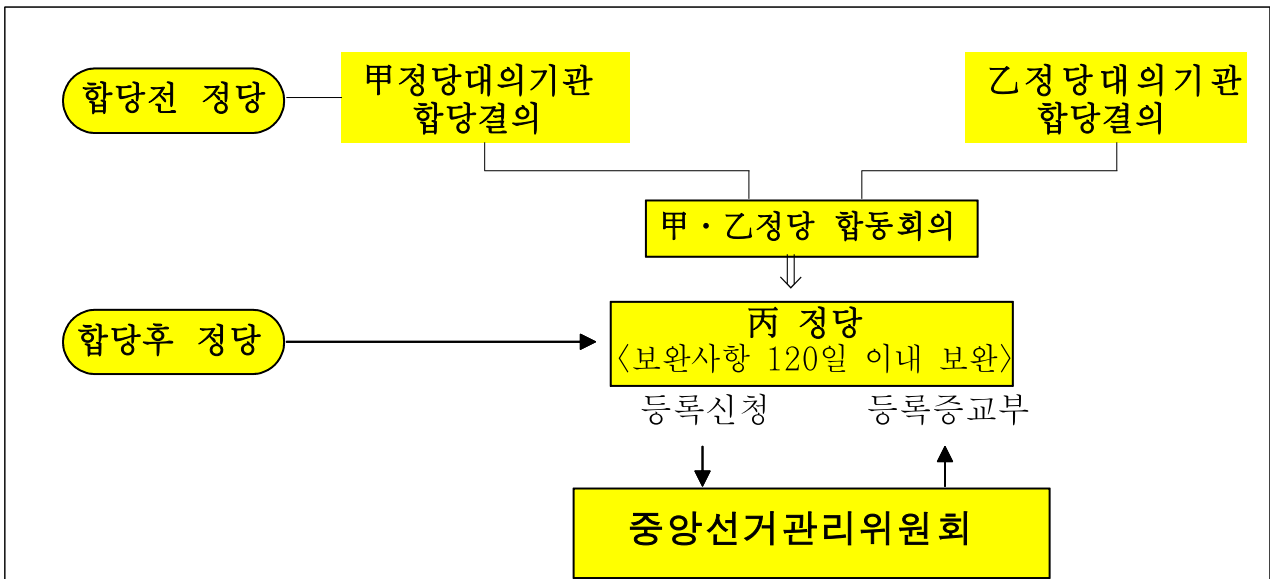
수임기관이라 함은 대의기관으로부터 특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신설합당

신설합당은 2 이상의 등록된 정당이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합당절차

정당의 신설합당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대의기관의 결의

가)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려고 할 때에는 합당에 관하여 권한 있는 대의기관(전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나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법 제19조, 법 제32조제1항).

나)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

2) 2단계 : 대의기관 합동회의의 결의

합당을 하고자 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합동회의에서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

합동회의에서 하여야 할 사항

- ◆ 합당결의
- ◆ 당명결정
- ◆ 강령 및 당헌의 제정
- ◆ 대표자·간부의 결정
- ◆ 사무소 소재지의 결정

3) 3단계 : 합당등록신청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으면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의 대표자는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합당은 합당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19조제2항).

나. 합당등록신청

- 1) 등록신청자 :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의 대표자
- 2) 등록신청기간 : 합동회의에서 합당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 3)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는 약칭 포함)
- 합당한 각 구(舊)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시·도당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주소
- 당원의 수

◆ 구비서류

- | | |
|-------------------|------------------|
|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 ● 간부의 명단 | ● 인영서 |
| ● 합동회의록 사본 | ● 시·도당의 일람표 |
|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 대표자의 이력서 |

4) 합당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정당의 명칭

- (1) 정당의 명칭은 현재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의 명칭 (약칭 포함)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법 제41조제2항, 제3항).
-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41조제4항)

나) 합동회의 회의록 사본

합동회의 회의록사본은 개최일시, 장소, 성원상황,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합당에 대한 결의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회의록 말미에는 기록자·확인자가 서명·날인을 하고 간인을 해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정당성립요건·사무소소재지·강령(기본정책)·당헌기재사항·기타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 2. 나. 4) 중앙당 등록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라) 등록신청사항의 보완

합당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음 사항은 합당등록신청일부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2항).

- (1)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2)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다. 합당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합당등록신청서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중앙당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라. 신설합당한 경우의 시·도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보며,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합당 전 시·도당의 당원은 합당된 시·도당의 당원이 됩니다(법 제19조, 제21조).

1)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변경등록

- 가) 변경등록신청자 : 구공동대표자 또는 신대표자
- 나) 신청기간 : 중앙당의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
- 다) 필요절차 : 시·도당 개편대회
- 라) 변경등록 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변경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사항

- 시·도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간부의 명단
- 인영서
- 개편대회 회의록 사본
- 중앙당 승인서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대표자의 이력서

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변경등록신청자 : 합당 전 각 정당의 시·도당 대표자(공동대표자) 동일 시·도내에 합당 전 정당이 2 이상 있을 경우 각 정당의 대표자는 변경등록신청 전까지는 신설합당 정당의 공동대표자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규칙 제12조제2항).

(2) 그 외의 변경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의 작성은 제3장 3. 다. 4)의 시·도당변경등록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2) 변경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변경등록신청서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3) 변경등록 신청기간이 경과된 시·도당의 처리

중앙당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19조제4항).

☞ 벌칙 합동회의 합당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중양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합당한 각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간부의 성명·주소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당인 및 대표자직인의 인영			
시·도당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주소			
당 원 의 수	합 계	관할 시·도 안에 주소를 둔 당원	관할 시·도 밖에 주소를 둔 당원
<p style="text-align: center;">중양당을 위와 같이 신설합당하였기에 「정당법」 제20조제1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당 대표자 직인</p>			
<p>중양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1부. 2.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3. 간부의 명단 1부. 4. 인영서 1부 5. 합동회의록 사본 1부. 6. 시·도당의 일람표(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1부. 7.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8.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은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은 “직책”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2. 합당등록 신청시 시·도당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란에 “120일 이내 보완예정”이라 기재합니다.</p> <p>3.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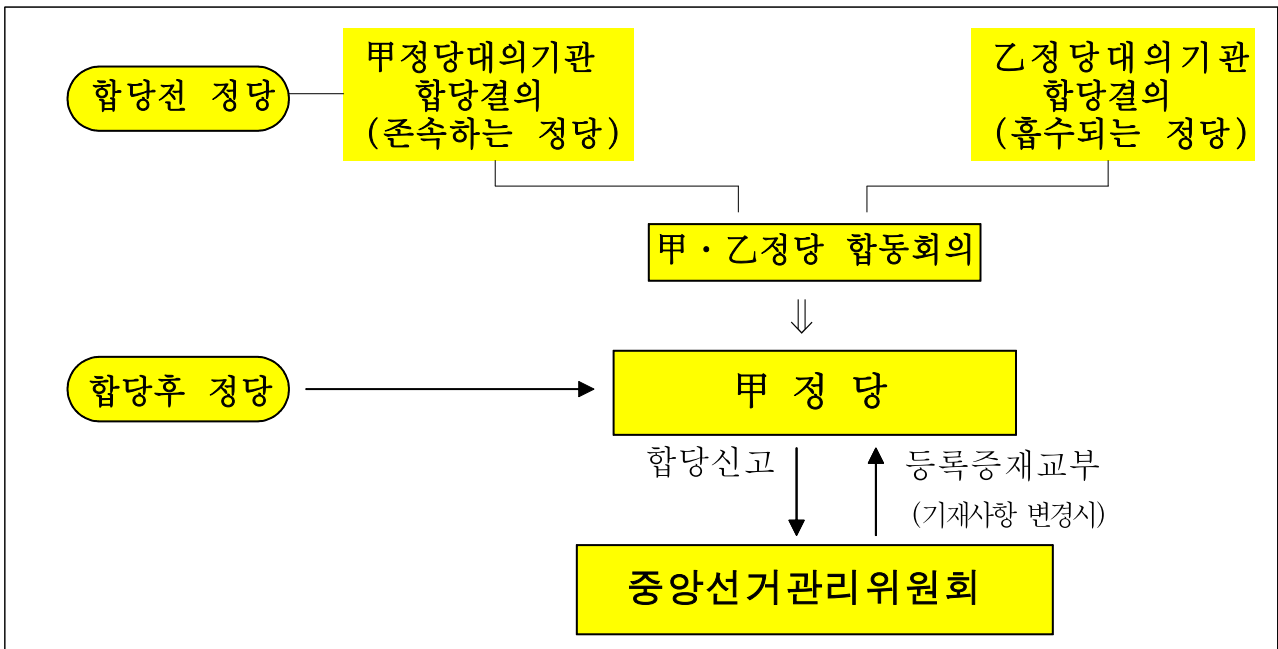
시·도당 신설합당 변경등록 신청서				
문서번호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간부성명·주소				
인 영	당 인			
	대표자직인			
<p>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한 결과 시·도당의 등록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14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시·도당 대표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2. 간부의 명단 1부. 3. 인영서 1부. 4. 개편대회 회의록 사본 1부. 5. 중앙당 승인서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7.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탈당·사망·궐위·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p> <p>2.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p> <p>3.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을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을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4. 당헌·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개편에 중앙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의 승인서를 제출합니다.</p> <p>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3. 흡수합당

흡수합당은 하나의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합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려고 할 때에는 합당에 관하여 권한 있는 대의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을 하고자 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이나 그 대의기관으로부터 합당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제1항).

가. 합당절차

정당의 흡수합당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대의기관의 결의

가)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려고 할 때에는 합당에 관하여 권한있는 대의기관(전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나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제1항).

나) 대의기관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

2) 2단계 : 대의기관 합동회의의 결의

합당을 하고자 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합동회의에서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

3) 3단계 : 흡수합당신고

합동회의의 결의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합당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당은 합당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

나. 합당신고

1) 합당신고자 :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

2) 합당신고기간 : 합당을 위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3) 합당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합당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 합당신고사항

- | | |
|-------------------|-------------------|
| ● 존속하는 정당의 명칭 | ● 흡수되는 정당의 명칭 |
| ● 사무소의 소재지 |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 당원의 수 | ● 합당결의연월일 |

◆ 구비서류

- | | |
|------------|------------------|
| ● 강령과 당헌 | ● 간부의 명단 |
| ● 인영서 |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 ● 합동회의록 사본 |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 ● 대표자의 이력서 | |

4) 합당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합당신고서에 날인하는 대표자의 직인

합당신고서에 날인하는 대표자의 직인은 존속하는 정당의 기 등록된 대표자직인이어야 합니다.

나) 그 외의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제3장. 2. 나. 4)의 중앙당등록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 합당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합당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바로 접수·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라. 흡수합당한 경우의 시·도당

정당이 다른 정당을 흡수합당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신고를 한 경우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보며, 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법 제19조제5항), 합당 전 시·도당의 당원은 합당된 시·도당의 당원이 됩니다(법 제21조).

1) 동일 시·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과 흡수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있을 경우


합당으로 흡수되는 정당의 시·도당은 등록말소되고, 당원들은 존속하는 시·도당의 당원이 됩니다.

2) 동일 시·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 하나만 있을 경우

합당으로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은 존속하는 정당의 시·도당이 되며, 당인과 직인의 인영을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3) 동일 시·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경우

합당으로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당해 시·도당은 중앙당의 합당에 의하여 존속하는 정당의 시·도당이 되며, 이 경우 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4장. 2. 라. 1)의 신설합당한 시·도당의 경우에 준하여 시·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칙** 합동회의 합당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흡수합당신고를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			
문서번호			
명 칭	존 속 하 는 정 당 (약 칭)		
	흡 수 되 는 정 당 (약 칭)		
사 무 소 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간 부 의 성 명 · 주 소			
강 령 (또는 기본정책) 과 당 헌			
당 인 및 대표자 직인 의 영			
당 원 의 수	합 계	관 할 시 · 도 안 에 주 소 를 둔 당 원	관 할 시 · 도 밖 에 주 소 를 둔 당 원
합 당 결 의 연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당을 위와 같이 흡수합당하였기에 「정당법」 제20조제4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당 대표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령과 당헌 1부. 2. 간부의 명단 1부. 3. 인영서 1부. 4.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5. 합동회의록 사본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7.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은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은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2. 흡수합당을 하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없이 본 흡수합당신고서에 의하여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합니다.</p> <p>3.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당 흡수합당 변경등록 신청서					
문서번호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사무소의소재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간부성명·주소					
인 영	당 인				
	대표자적인				
<p style="text-align: center;">흡수합당에 따른 시·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한 결과 시·도당의 등록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었기에 「정당법」 제14조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시·도당 대표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각 1부. 2. 간부의 명단 1부. 3. 인영서 1부. 4. 개편대회 회의록 사본 1부. 5. 중앙당 승인서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7. 대표자의 이력서 1부. 					
<p>주 1. 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탈당·사망·결위·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p> <p>2. “변경내용”란에는 기존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p> <p>3. “간부의 명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발기인의 명단”에 준하여 작성하되, “발기인”의 명단을 “간부의 명단”으로, “연번”란을 “직책”란으로 고쳐서 사용하며, “인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에 의합니다.</p> <p>4. 당헌·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개편에 중앙당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의 승인서를 제출합니다.</p> <p>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p>					

제 5 장 정당의 소멸

1. 개 요

정당의 소멸에는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자진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과 중앙당(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시·도당창당승인취소, 중앙당 합당 후 법정기한내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도당 소멸 등이 있습니다.

2. 등록취소

정당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가. 취소요건

1) 중앙당

- 가) 정당의 시·도당 총수가 5개 미만인 때(법 제17조, 법 제44조제1항제1호)
- 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법 제44조제1항제2호)
- 다) 신설합당 등록신청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두어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법 제20조)

2) 시·도당

시·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천인에 미달된 경우(법 제18조, 법 제44조제1항제1호)

나. 등록취소절차

1) 1단계 : 흠결보고

정당의 성립요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흠결일자와 흠결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2항).

2) 2단계 : 흠결보완

정당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정당의 대표자는 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유예기간 내에 흠결사항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등록취소의 유예기간(보완기간)

- ◆ 법 제17조(법정 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정당 성립요건 흠결의 경우 :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요건 흠결이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제1항).
- ◆ 정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시 추후 보완하기로 한 사항 : 중앙당 합당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제2항)

3) 3단계 : 등록취소

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유예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합니다(법 제20조제3항, 제44조).

👉 벌칙

- 정당의 성립요건 흠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 정당의 성립요건 흠결보고를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중앙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서식예시】

중앙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문 서 번 호		
1. 흠결발생 연월일	년 월 일	
2. 흠 결 사 항	흠결 전 시·도당 수	흠결 후 시·도당 수
	(개)	(개)
3. 흠결 후 시·도당 현황		
구 분 시·도당 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p>정당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 「정당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당 대표자 직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보고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p>		

【시·도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서식예시】

시·도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문 서 번 호		
1. 흠결발생 연월일	년 월 일	
2. 흠 결 사 항	흠결 전 법정당원의 수	흠결 후 법정당원의 수
	(명)	(명)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당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 「정당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당○○시(도)당 대표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보고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p>		

3. 자진해산

가. 개 요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법 제45조), 대의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에 의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당의 경우 전국당원(대의원)대회,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대의원)대회를 말합니다.

나. 자진해산신고

- 1) 자진해산 신고자 : 당해 정당의 대표자
- 2) 자진해산 신고시기 : 해산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 3) 자진해산 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 ◆ 신고사항
 - 정당의 명칭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 구비서류
 - 대의기관의 자진해산결의 회의록 사본

4. 등록말소

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등록말소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헌법 제8조제3항, 제4항).

1) 해산결정 및 통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됩니다(법 제47조).

2) 등록말소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의 해산결정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정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공고·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법 제47조).

3)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법 제40조),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41조제2항).

 **벌칙**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항)

나. 시·도당 등록말소

시·도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시·도당창당승인을 취소하거나(법 제46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4항)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말소합니다.

1) 말소사유

가) 시·도당창당승인취소

시·도당의 등록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이 있어야 하는 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이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합니다(법 제46조, 법 제47조).

나)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 불이행

정당이 신설합당한 경우 동일한 시·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2 이상 있을 경우 이들 시·도당은 중앙당의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개편대회를 개최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기간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그 등록을 말소합니다(법 제19조제3항, 제4항).

다)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시·도당의 존립은 중앙당의 존립과 함께 하는 바, 중앙당이 그 성립요건의 흠결로 등록취소 되거나, 자진해산 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된 경우 당해 정당의 소속 시·도당도 등록말소 되며 이것은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도 같습니다.

2) 말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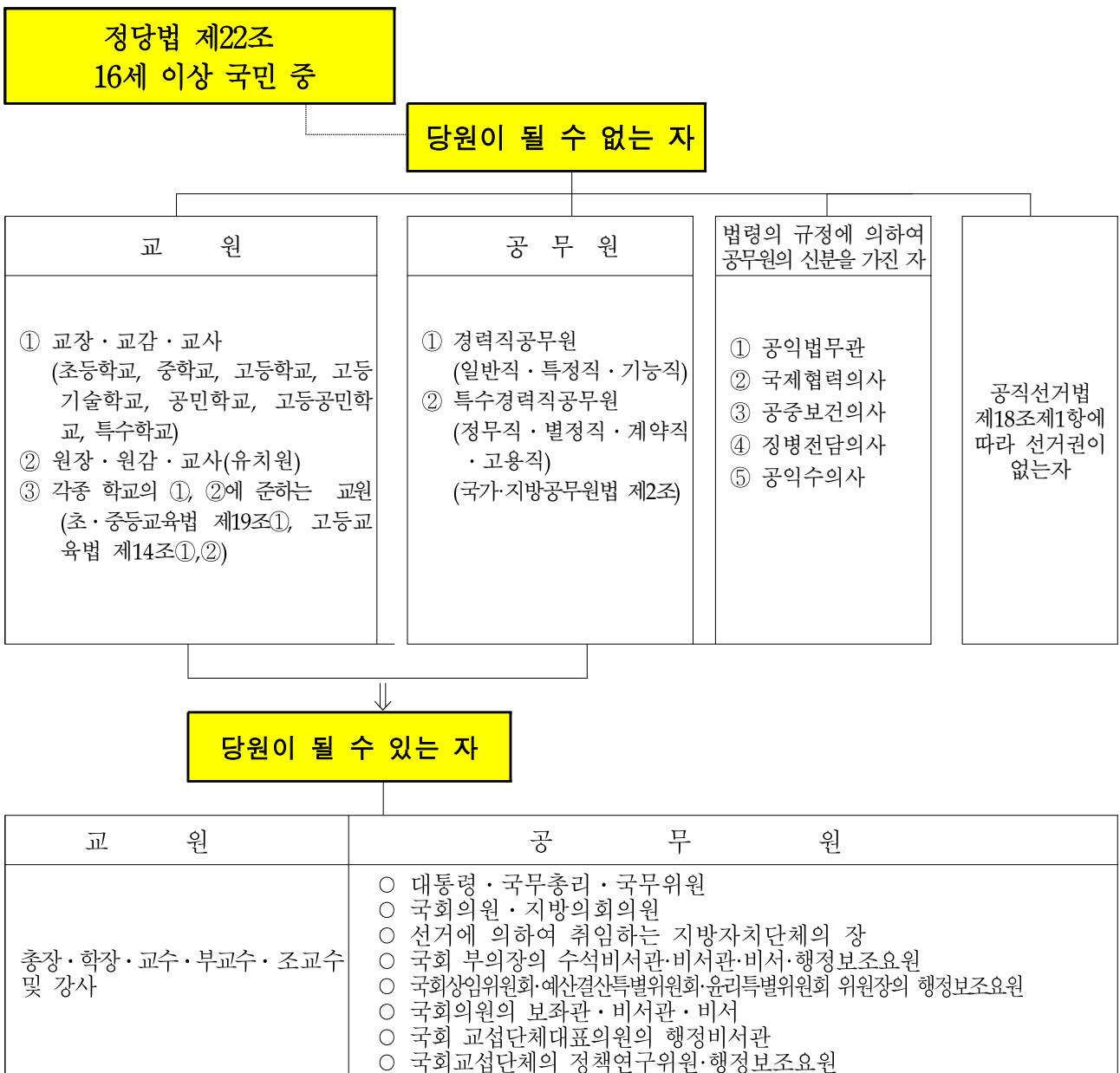
시·도당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공고·통지하는 등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제 6 장 입당 및 탈당

1. 입 당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받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법 제22조)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받기인 및 당원의 자격



나. 입당절차

-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제1항).
※ 아울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2)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모사전송(FAX)이나 스캐너로 입력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고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받은 입당원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심의 지연 또는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중앙당 등”이라 함)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당 등이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제3항).

다. 입당의 효력발생

입당의 효력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내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시·도당은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 접수거부 등의 이유로 중앙당 등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 등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라. 당원명부 등재 및 당원증 발급

- 1) 시·도당 등은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입당원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시·도당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원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한 입당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3) 중앙당 등은 입당원서를 접수, 해당 시·도당 등에 송부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강제입당의 금지 등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42조제1항,제2항).

바. 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의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정당운영에 관계되는 관계서류와 인장 등을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헌에 규정된 인계의무자는 인계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 정당이 인계할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칙 제18조).

- 1) **중 앙 당** :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2) **시·도당** :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별칙

-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가입을 강요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
-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56조)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제1항)
-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제3항)

【입당원서 서식예시】

입 당 원 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원자격 제한 여부 주1)		
주 소			
<p>본인은 ○○당 ○○시·도당에 입당하고자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주1)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나,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정당법」 제22조)</p> <p>주2)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정당법」 제42조)</p> <p style="text-align: center;">○○당 ○○시·도당 귀중</p>			
<p>법정대리인 동의서</p> <p>상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 정당의 입당신청(「정당법」 제23조제1항)에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p>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p><유의사항></p> <p>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정당법」 제42조는 <u>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u> 있으며 동법 제54조에서 <u>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u>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주」 주민등록번호는 당헌·당규에 따라 생년월일, 나이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서식예시】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

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접수일자	입당원서 송부 시·도당	비고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를 접수한 경우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 서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원명부 서식예시】

당원명부

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입당 연월일	당적변경		비고
					연월일	사유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식에는 시·도당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당원과 시·도당 관할구역밖에 주소를 둔 당원을 구분하여 각각 별장으로 작성합니다.
 3. 당적변경사유란에는 ‘전직’, ‘사망’, ‘거주이전’ 등으로 기재합니다.
 4.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탈당원명부는 본 당원명부의 당적변경란에 탈당연월일과 ‘탈당’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5.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한 입당인 경우 비고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한 입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 탈 당

가. 탈당절차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날인한 탈당신고서를 모사전송(FAX)이나 스캐너로 입력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로도 탈당신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고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받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나. 탈당의 효력발생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그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합니다(법 제25조제2항).

다. 당원명부 말소 및 탈당증명서 교부

1)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 후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3항).

2) 전자서명법에 의한 탈당신고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탈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한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4항).

☞ 벌칙

-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제1항)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0조제2항)

【탈당신고서 서식예시】

탈 당 신 고 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자 택	
			직 장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사유로 귀당을 탈당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탈당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당 ○○시·도당 귀중</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탈당신고서는 소속 시·도당에 제출합니다. 다만,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3.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3항,제4항).
 4.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합니다 (법 제25조제2항).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서식예시】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접수일자	탈당신고서 송부 시·도당	비고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송부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 서식에 기재합니다.

【탈당원명부 서식예시】

탈당원명부

번호	당원명부 등재번호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탈당 연월일	비고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탈당연월일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입니다.
 3. 전자서명법에 의한 탈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한 탈당인 경우 비고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탈당”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한 탈당”이라고 기재합니다.
 4.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탈당원명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탈당증명서 서식예시】

탈 당 증 명 서

탈당증명 번호	제 호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탈당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당을 탈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당 ○ ○ 시·도당 [당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 ○ [직인]</p> <p style="text-align: left;">○ ○ ○ 귀하</p>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탈당연월일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3. 탈당증명서는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 호』란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에 의한 탈당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탈당증명서교부대장 서식예시】

탈 당 증 명 서 교 부 대 장

증 명 서 발급번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탈 당 연월일	발 급 일 자	수령자 (인)	비고

- 주 1. 상기 서식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보다 자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탈당연월일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입니다.

제 7 장 정당의 정기보고

- ◆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1항).
- ◆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바,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제3항).

1. 정당의 정기보고

가. 작성기준일 : 12월 31일 현재

나.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작성·제출자 :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표자

라. 보고내용

1) 당원의 수

시·도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수와 시·도당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당원의 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당에서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당원의 수와 중앙당에서 제출하는 시·도당별 당원의 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2) 활동개황

가) 연간주요활동상황

당해 정당의 연간 주요활동상황을 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기관별 활동상황

정당의 연간 활동상황을 당헌·당규상의 기관별(의결기관, 심의기관, 집행기관 등)로 구분하여 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다) 기능별 활동상황

정당의 연간 주요활동상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 라) 기타 정당사 발간자료가 될 수 있는 사적자료 등
- 마) 공직선거관련 정견·정책집(선거가 있었던 해)

3) 중앙당의 정책추진내용 등의 작성방법

- 가) 분야명은 「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 나)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0조제2항).

2.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

- 가. 작성기준일 : 12월 31일 현재
- 나.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 다. 작성·제출자 :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대표자
- 라. 보고서 내용

1) 정책연구소 현황

- 가) 인력현황
- 나) 사무소 설치현황

2) 연간 활동실적

- 가)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 나) 토론회 등 개최 실적
- 다) 정책홍보 실적
- 라) 교육·연수 실적
- 마) 그 밖의 활동상황(연구실적 및 활동실적)

벌칙

- 정기보고를 하지 않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 정기보고를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2조제1항)

○ ○ ○ ○ 년도

정 기 보 고

(당원의 수, 활동개황, 정책추진내용·결과·계획)

20 . ○ . ○ .

○ ○ 당

I. 당원의 수

1. 시·도당별 당원의 수 총괄

구 분 시·도당	당 원 의 수			비 고
	관할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수	관할시·도밖에 주소를 둔 당원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0	0	0	

「주」 시·도당별 당원의 수는 시·도당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당원의 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당비납부 당원의 수

당부별	구분	당원의 수(A)	당비납부자 수(B)	비율(B/A)	비 고
중앙당(A)		기재안함		기재안함	
시·도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합 계					

- 「주」 1. 동일인이 수회 납부한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2. 동일인이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되며, 중앙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속 시·도당의 인원수에 산입합니다.
 4. 시·도당의 당비납부 당원의 수는 해당 시·도당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당비납부 당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5. 비율은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입합니다.

II. 활동개황

1. 정당운영상황

가. 사무소 설치현황

구 분	소재지	설치형태			비 고
		당소유	임 차	기타	
사무소					
기타					
시설					

「주」 1. 「사무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사무소를 말합니다.

2. 「기타시설」은 중앙당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서 중앙당의 부속시설 (당원교육시설·연구소 등)을 말합니다.

나. 유급사무직원수 현황

월별 당부별	유급사무직원수(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앙당													
시·도당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합 계													

「주」 1. 중앙당에는 100인(「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는 그 수에서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중앙당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1항, 제4항).

2. “유급사무직원”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15일 이상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자이고, 월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합니다(법 제30조제3항).

다. 대표자·간부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선출상황

선출직명	성명	선출일자	선출방법	비고

「주」 선출방법은 「경선」, 「정기(임시)전당대회 추대(단독출마시)」, 「대표자 임명·지명」, 「공천심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기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정당의 활동상황

가. 연간 주요활동상황

일자	내용	비고
	○	

「주」 연간 당의 주요활동 내용을 일자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기관별 활동상황

1) 의결기관

가) 전국대의원대회

회의차수 (일시)	장소	내용	비고
	○	○	

「주」 1.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란에 “개최실적 없음”이라 기재합니다.
2. 내용란에는 의결내용 등을 요약·기재합니다.
3. 비고란에는 정기대회, 임시대회 등으로 구분·기재합니다.

나) 중앙위원회

회의차수 (일시)	내용	비고
	○	

다) 당무회의(또는 기타회의)

회의차수 (일시)	내용	비고
	○	

2) 심의기관

가) 정책위원회 (정책심의회)

회의차수 (일 시)	내 용	비 고
	○	

3) 집행기관

가) ○○국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당헌·당규상의 집행기관의 활동상황을 기재합니다. (예 : 총무국, 조직국...)

4) 의원총회

일 자	내 용	비 고
	○	

5) 예산결산위원회

일 자	내 용	비 고
	○	

6) 특별위원회 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비고란에 특별위원회명을 기재합니다.

7) 기타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다. 기능별 활동상황

1) 조직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조직정비·당세확장·당원영입 등 각종 조직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홍보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당기관지, 책자의 발행·배포 및 각종 홍보활동사항을 기재합니다.

3) 조사·연구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세미나·공청회등 각종 조사·연구활동상황을 기재합니다.

4) 교육훈련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당원집회등 각종 교육훈련활동 상황을 기재합니다.

5) 대민봉사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대민봉사활동 상황을 기재합니다.

6) 기타활동

○ 시민참여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 인터넷을 통한 정당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 기타 활동

일 자	내 용	비 고
	○	

「주」 정당사 발간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기재합니다.

Ⅲ. 정책추진내용 및 계획

1. ○○○○년도 정책추진내용 및 결과(목표달성도)

○ 분야명 :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추진결과	달성도 (%)
○	○	○	
○	○	○	

「 주 」 분야명은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 따라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국방,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추후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야를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2. ○○○○년도 주요정책추진계획

○ 분야명 :

추진계획	추진방향	비 고
○	○	
○	○	

「 주 」 분야명은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 따라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국방,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추후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야를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 ○ ○ ○ 년도

정 기 보 고

(당원의 수 및 활동개황)

○ ○ 당 ○ ○ 시(도)당

I. 당원의 수 등

1. 당원의 수

합 계	관할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 수	관할시·도밖에 주소를 둔 당원 수	비 고

주 : 당원수는 정기보고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당비납부 당원의 수

당원의 수	명	당비납부 당원의 수	명

- 주 1. 당비납부 당원이란 당헌·당규에 의해 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합니다.
 2. 동일인이 수회 납부한 경우에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3. 당비납부 당원의 수는 수입지출부 및 당비납부영수증원부에 의해 확인하시고 작성합니다.

II. 활동개황

1. 정당운영상황

가. 사무소 설치현황

설치수 (등록수)	설 치 형 태				비 고
	당소유	임 차	당원사택	기 타	

주 : 사무소 설치형태에 따라 해당칸에 체크(√)합니다.

나. 유급사무직원수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주 1. “유급사무직원”이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합니다.
3. 유급사무직원수는 정당의 수입·지출부에 의해 급여를 지급한 일수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다. 대표자,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선출상황

선출직명	성명	선출일자	선출방법	비고

- 주 1. 선출방법은 「경선」, 「당대회 추대(단독출마)」, 「지명·임명/전략공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경선은 경선선거인·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을 실시하여 선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당대회 추대는 후보자가 1명이어서 시·도당 대회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추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지명·임명/전략공천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일방적으로 심사·결정하여 선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활동상황

가. 연간주요활동상황

일자	내용	비고

주 : 연간 시·도당의 주요활동상황을 일자 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기관별 활동상황

기관별 \ 구분	일 자	내 용	비 고
당대회			
○○국			
△△국			

주 :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개편을 위한 대회 등 당헌·당규상의 정기·임시대의원대회 모두를 말합니다.

다. 기능별 활동상황

기능별 \ 구분	일 자	내 용	비 고
조직활동(당세 확장 등)			
홍보활동(기관지 배포 등)			
정책 개발 · 연구 활동			
당원 교육 · 훈련 활동			
당원단합을 위한 집회개최			
대 민 봉 사 활 동			
기 타 활 동			

라. 기타 활동상황

일 자	내 용	비 고

주 : 정당사 발간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기재합니다.

○○○○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 당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 현황

I. 일반현황

1. 사무소

소 재 지	설 치 형 태				비 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2.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박사급:	자체고용:	
석사급:		
기 타:	외부파견:	
합 계:	합 계: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3.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II. 주요 활동상황

1. 연구·개발실적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부.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2. 토론회 등 개최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교육·연수활동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 「주」 연구소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4. 정책홍보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5. 간행물 등 자료발간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6. 그 밖의 주요활동

일 시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 연구기간 :
- 연구분야 :
- 주 제 :
- 연구방법 :

연구·개발내용
<input type="checkbox"/> 연구목적
<input type="checkbox"/> 연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 「주」 1. 이 서식은 A4 규격으로 주제별로 각각 작성하되, 연구·개발내용은 목적·내용·성과 등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2. “연구성과”는 연구물이 소속 정당 또는 정부·정치인 등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정치·사회에 영향을 미친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제 8 장 인영확인 및 과태료

1. 정당의 인영확인신청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인영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칙 제9조).

가. 신청자 :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표자

나. 신청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다. 신청방법 : 필요한 수량의 인영확인서에 용도를 기재하고, 당인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서면으로 신청

2. 과태료

가. 부과요건

- 1) 법 제14조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때
- 2) 법 제20조의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해태한 때
- 3) 법 제20조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해태한 때
- 4) 법 제35조의 정기보고를 해태한 때

나. 신청 및 신고기한

- 1) 변경등록신청기한 : 변경이 생긴 때로부터 14일 이내
- 2) 합당의 신청·신고기한 : 합동회의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 3) 정기보고기한 : 중앙당·정책연구소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시·도당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다. 부과대상 :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대표자

라. 부과금액 : 100만원 이하

마. 이의신청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관련법조 : 정당법 제62조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인 영 확 인 서	
명 칭	
확 인 인 영	
용 도	
당 인	
대표자직인	
<p style="text-align: center;">위 인영은 우리 위원회에 등록된 인영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p>	
<p>주 1. 「정당사무관리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의 확인신청시에는 본 인영확인서의 해당란을 작성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p> <p>2. 정당은 인영확인이 필요한 매수의 인영확인서를 작성·제출합니다.</p>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문서번호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과태료 부담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권자		과태료부담자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 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귀 위원회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정당법」 제6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3항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당 대표자	직인
○○당○○시·도	당 대표자	직인
○○당	정책연구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신청인”란에는 정당·정책연구소의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부 록 1

정당에 관한 신청·신고 등의 사무처리 일람표

구 분		의무자	신고·신청·처리기준	관계법조	비 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창준위 대표자	창준위를 결성한 때	법 제7조 규칙 제2조	
	변경신고	"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14일 이내	법 제7조	* 별지 제4호 서식 * 발기인 제외
	신고필증 교 부	중앙위원회	-	규칙 제2조	* 처리기준일에 관한 규정 없음 * 법 제16조 준용
	소멸처리	"	결성신고일부터 6월 경과 후	법 제8조 규칙 제4조	
창당집회개최공고		창준위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법 제10조	* 중앙당만 해당 * 일간신문 이용
정당등록	등록신청	창준위 대표자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	법 제11·12·13조	* 별지 제6호, 제9호 서식
	변경등록 신 청	중앙당·시·도당 대표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14일 이내	법 제14조	* 당원의 수 등 일부사항 제외
	수리·등록증 교부 등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법 제15·16조 규칙 제7조	*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신설합당 등 록	등록신청	합당된 정당 의 대표자	합동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19·20조 규칙 제10·12조	* 별지 제13호 서식
	시·도당 변경등록	시·도당 대표자	합당등록신청일부 3월 이내	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신설합당 시·도당이 2이상인 경우
	수리·등록증 교부 등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법 제15·16조 규칙 제10·12, 14조	
흡수합당 신 고	신 고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	합동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19·20조 규칙 제11·13조	*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처리	중앙위원회	흡수합당신고 접수 후	규칙 제11조	
	등록말소	시·도 위원회	중앙당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규칙 제13조	* 흡수된 정당의 시·도당

구 분		의무자	신고·신청·처리기준	관계법조	비 고
정당성립요건의 흡결보고		중앙당	법정 시·도당수에 흡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35조	
		관할 시·도당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 요건에 흡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법 제35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당해 정당	등록취소, 자진해산 및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	
시·도당 등록대장의 당원의수 변경기재	흡수합당 시	관할 시·도당	중앙당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때 지체 없이	규칙 제13조	
	정기보고를 접수한 때	"	정기보고에 의하여 당원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	규칙 제19조	
	법정 당원수 흡결보고 시	"	법정 당원수의 흡결보고를 받은 때	법 제35조	
인 영	신고 (창준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	중앙당창준위결성신고서 (창준위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	법 제7조	
	등록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등록 시	법 제12· 13조	*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인 및 대표자 직인
	변경 (신고·등록)	정당의 대표자, 창준위 대표자	등록된(신고된) 당인(회인) 및 직인 변경 시	법 제14조	* 창준위·중앙당· 시도당의 당인(회 인)·대표자 직인
	확인신청	정당의 대표자	* 필요시 * 처리기준일: 실제소요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규칙 제9조	* 별지 제2호 서식

부 록 2

규칙 별지서식 및 참고서식 차례

가. 별지서식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 9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발기인의 명단 / 11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2호>인영서 / 13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지 제1호> 간부의 명단 / 29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 / 19
-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진해산신고서(창준위) / 21
-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자진해산신고서(정당) / 72
-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중앙당 등록신청서 / 28
-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시·도당 등록신청서 / 42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중앙당 변경등록 신청서 / 38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당 변경등록 신청서 / 53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당 신설합당 변경등록 신청서 / 61
-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시·도당 흡수합당 변경등록 신청서 / 66
-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인영확인서 / 105
-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 / 60
-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 / 65
-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6

나. 참고서식

- 【참고 1】 대표자 취임동의서 서식 / 14
- 【참고 2】 대표자 이력서 서식 / 18
- 【참고 3】 시·도당 일람표 서식 / 31
- 【참고 4】 간부 취임동의서 서식 / 33
- 【참고 5】 시·도당 창당승인서 서식 / 47
- 【참고 6】 중앙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서식 / 69
- 【참고 7】 시·도당 성립요건 흠결보고서 서식 / 70
- 【참고 8】 입당원서 서식 / 78
- 【참고 9】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서식 / 79
- 【참고 10】 당원명부 서식 / 79
- 【참고 11】 탈당신고서 서식 / 82
- 【참고 12】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서식 / 83
- 【참고 13】 탈당원명부 서식 / 83
- 【참고 14】 탈당증명서 서식 / 84
- 【참고 15】 탈당증명서교부대장 서식 / 84